[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1. 8.>

[ ]총포 [ ]도검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허가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발급일	
	갱신기간 만료일	
	무기류의 보관장소	
	번 호	
	허가관청	

지난 5년간	총포의 경우 수렵 면허장 조수 포획 허가 취득장소	
	총포의 경우 수렵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 소비상황·사격실시상황	
	다른 무기류 소지허가 내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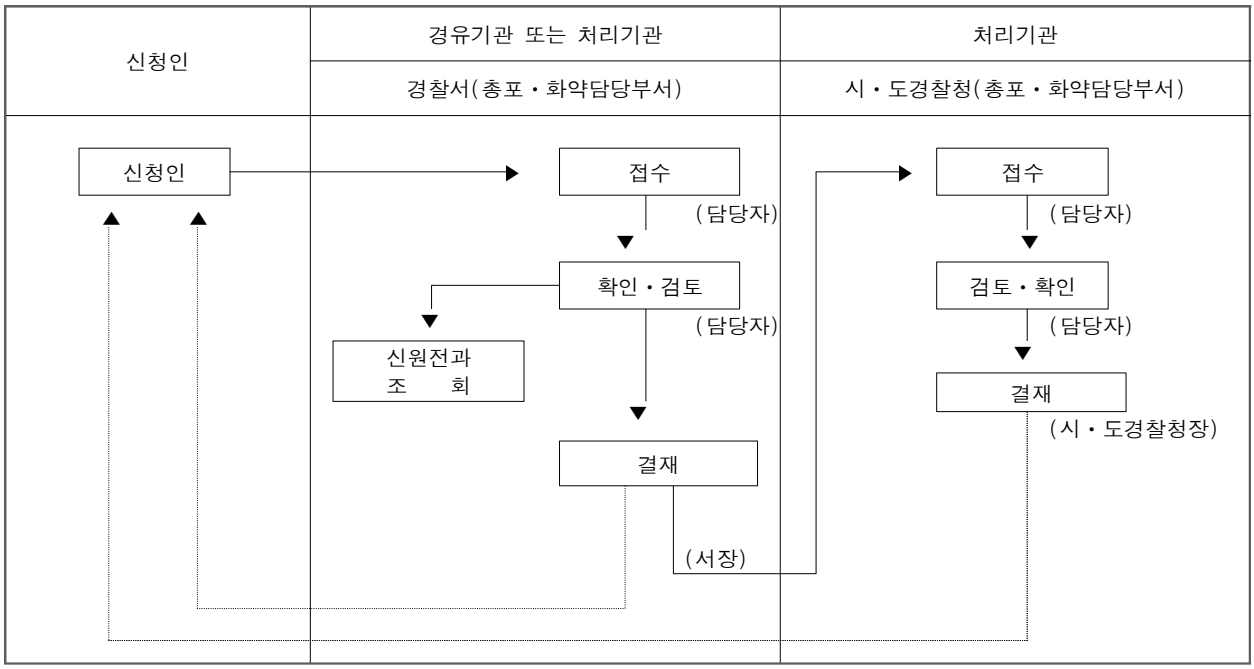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사진(가로 2.5㎝, 세로 3㎝)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도검·석궁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원

유의사항

1.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서 상품회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